

의안번호	2203073
의 퇴 인	임오경의원
회 답 일	2024. 9. 4.
추계번호	24C307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수 확대에 소요되는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 1억 8,000만원, 2030년 1억 8,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억원(연평균 1억 8,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중재위원수 확대 (제7조제3항)	180	180	180	180	180	900	1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제3항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언론중재위원회는 60명 이상 12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함 - 현행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7조제3항(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중재위원 증원에 따라 별도의 조직 신설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제3항)
 - 개정안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상 중재위원의 수를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1억 8,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중재위원수당은 직무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구성되는데 직무수당의 경우, 중재위원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직무수당 추가재정소요: 30명 × 월 50만원 × 12개월
 - 다만, 심사수당은 심사건별로 발생하는바 중재위원 증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고로 2023년 기준 10억원이 중재위원수당으로 소요되었고, 최근 3년간 중재심의 건수는 다음과 같음

[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심의 현황: 2021~2023년

(단위: 건)

연도	청구 건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2021	4,278	2,969	108	153	131	52	390	28	61	149	174	63
2022	3,175	2,377	55	114	81	60	250	25	39	50	99	25
2023	4,085	3,114	23	123	117	67	357	33	82	98	58	13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